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를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명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변경하면서 환경피해구제 조사·판정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이체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및 소관 정보시스템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 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5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7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명(9급 1명) 및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연구관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과 환경교육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 4명(9급 4명),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 4명(5급 1명, 9급 3명)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환경책임보험위원회”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제10항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 중 “교통환경과”를 “교통환경과, 생활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피해구제과, 생활환경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633”을 “629”로 하고, 일반직 계 “627”을 “62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35”를 “34”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5”를 “94”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5”를 “6”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7”을 “95”로 하며, 행정주사보 “8”을 “7”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1”을 “62”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33”을 “629”로 하고, 일반직 계 “627”을 “62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35”를 “34”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0”을 “109”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5”를 “6”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1”을 “89”로 하며, 행정주사보 “8”을 “7”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3”을 “54”로 하며, 사무운영서

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37조제1항 관련)”을 “(제37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총계 “360”을 “357”로 하며, 일반직 계 “360”을 “357”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4”를 “3”으로 하며,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5”를 “36”으로 하고, 공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0”을 “9”로 하며,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9”을 “38”로 하고,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7”을 “36”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3 중 총계 “19”를 “18”로 하고, 일반직 계 “19”를 “18”로 하며,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739”를 “732”로 하고, 일반직 계 “739”를 “732”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28”을 “127”로 하고,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31”을 “29”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2”를 “101”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71”을 “7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22”를 “20”으로 하고, 방호서기보 “3”을 “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740”을 “7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0”을 “733”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31”을 “130”으로 하고,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31”을 “29”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5”를 “104”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65”를 “64”로 하며, 행정서기보 “22”를 “20”으로 하고, 방호서기보 “3”을 “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349”를 “347”로 하고, 일반직 계 “349”를 “347”로 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2”를 “11”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41”을 “40”으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351”을 “349”로 하고, 일반직 계 “351”를 “349”로 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2”를 “11”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31”을 “30”으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67”을 “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7”을 “6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68”을 “67”로 하고, 일반직 계 “68”을 “67”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176”을 “175”로 하고, 일반직 계 “176”을 “175”로 하며, 행정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6의3 중 총계 “176”을 “175”로 하고, 일반직 계 “176”을 “175”로 하

며, 행정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7 중 총 계 “22”를 “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를 “2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심사관) “6”을 “8”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를 “7”로 한다.

별표 17의4 중 총계 “144”를 “145”로 하고, 일반직 계 “144”를 “145”로 하며, 4급 이하 “98”을 “99”로 한다.

별표 2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와 제6호를 삭제한다.

1. 제4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환경부령 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

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 제

9장의 제목,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9의 정원 3명(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명으로 본다.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357
일반직 계	35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공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환경주사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
통계주사 ·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0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0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3
행정서기보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7
운전서기보	4
방호서기보	2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7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6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2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8
공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9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8
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기록연구사	1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7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6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45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3
공업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7
공업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9
수의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

기계운영서기보

전문경력관 나군(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담당)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환경보건국) ① ~ ③ (생략)	제9조(환경보건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삭제>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9. <u>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u> 의 구성·운영	9. <u>환경책임보험위원회</u> ----- -----
10. ~ 20. (생략)	10. ~ 20.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9장 <u>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u> <u>사무국</u>	제9장 <u>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u> <u>위원회사무국</u>
제35조(<u>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u> <u>사무국</u>) ① <u>중앙환경분쟁조정위</u> <u>원회</u> 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 등급으로 한다.	제35조(<u>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u> <u>제위원회사무국</u>) ① <u>중앙환경분</u> <u>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
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
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⑨ (생략)

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
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다.

⑪ ~ ⑭ (생략)

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
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

정원) ① -----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사무국-----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1. _____

리과, 교통환경과

2. 환경보전국: 환경보전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생활환경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3. ~ 5. (생략)

제43조(한시정원) ①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② 삭 제

③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④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살
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 교통환경과, 생활환경과

2. 환경 피해 구제 과

3. ~ 5. (현행과 같음)

제43조(한시정원) ① -----

----- 2025년 12월 31일 -----

-----.

③ _____

2026

년 12월 31일

<삭 제>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화 학물질안전원에 둔다.		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 명), 별표 14의 정원 3명(행정서 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 및 별표 16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통 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 산서기보 1명)은 2024년 12월 3 1일까지 존속한다.	----- ----- ----- ----- ----- ----- 2026년 12월 31 일-----.
⑤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 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환경청 에 둔다.	⑤ ----- ----- ----- ----- 2027년 12월 31일----- ----- -----.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⑥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 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 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 환경과학원에 둔다.	<삭 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 부령 제746호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설된 기구(정책홍보팀, 시민소통팀 및 환경교육팀) 중 이 규칙 시 행으로 폐지되는 시민소통팀을 제외한 정책홍보팀 및 환경교육 팀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 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 ----- 2026년 12월 31일---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2의 정원 4 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 ----- -----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3	629	-4
·	·	·	
·	·	·	
일반직 계	627	623	-4
·	·	·	
·	·	·	
행정사무관	35	34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 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5	94	-1
·	·	·	
·	·	·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 · 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5	6	+1
·	·	·	
·	·	·	

환경부령 제958호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958호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4의 행정사무관·공업사 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 무관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 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 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4의 행정주사·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월 1일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97</u>	<u>95</u>	-2
·	·	·	
·	·	·	
행정주사보	<u>8</u>	<u>7</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61</u>	<u>62</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8</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3</u>	<u>629</u>	-4
·	·	·	
·	·	·	
일반직 계	<u>627</u>	<u>623</u>	-4
·	·	·	
·	·	·	
행정사무관	<u>35</u>	<u>34</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110</u>	<u>109</u>	-1
·	·	·	
·	·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u>5</u>	<u>6</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91</u>	<u>89</u>	-2
·	·	·	
·	·	·	
행정주사보	<u>8</u>	<u>7</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3</u>	<u>5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	(제37조제 1항 관련)	(제37조 제1항 본 문 관련)	
총계	<u>360</u>	<u>357</u>	-3
일반직 계	<u>360</u>	<u>357</u>	-3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4</u>	<u>3</u>	-1
·	·	·	
·	·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35</u>	<u>36</u>	+1
·	·	·	
·	·	·	
공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10</u>	<u>9</u>	-1

·	·	·	
·	·	·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 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39</u>	<u>38</u>	-1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 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u>37</u>	<u>36</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u>	<u>18</u>	-1
일반직 계	<u>19</u>	<u>18</u>	-1
·	·	·	
·	·	·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 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11</u>	<u>10</u>	-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39</u>	<u>732</u>	-7
일반직 계	<u>739</u>	<u>732</u>	-7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128</u>	<u>127</u>	-1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u>31</u>	<u>29</u>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102</u>	<u>101</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71</u>	<u>70</u>	-1
·	·	·	

·	·	·	
행정서기보	<u>22</u>	<u>20</u>	-2
·	·	·	
·	·	·	
방호서기보	<u>3</u>	<u>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40</u>	<u>733</u>	-7
일반직 계	<u>740</u>	<u>733</u>	-7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131</u>	<u>130</u>	-1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u>31</u>	<u>29</u>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105</u>	<u>104</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65</u>	<u>64</u>	-1
·	·	·	

·	·	·	
행정서기보	<u>22</u>	<u>20</u>	-2
·	·	·	
·	·	·	
방호서기보	<u>3</u>	<u>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9</u>	<u>347</u>	-2
일반직 계	<u>349</u>	<u>347</u>	-2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u>12</u>	<u>11</u>	-1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41</u>	<u>40</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51</u>	<u>349</u>	-2
일반직 계	<u>351</u>	<u>349</u>	-2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u>12</u>	<u>11</u>	-1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31</u>	<u>30</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5]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7</u>	<u>66</u>	-1
일반직 계	<u>67</u>	<u>66</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7</u>	<u>6</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8</u>	<u>67</u>	-1
일반직 계	<u>68</u>	<u>67</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7</u>	<u>6</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76</u>	<u>175</u>	-1
일반직 계	<u>176</u>	<u>175</u>	-1
·	·	·	
·	·	·	
행정서기보	<u>5</u>	<u>4</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76</u>	<u>175</u>	-1
일반직 계	<u>176</u>	<u>175</u>	-1
·	·	·	
·	·	·	
행정서기보	<u>5</u>	<u>4</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0항 관련)

.	.	.	
.	.	.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중앙환경분 쟁조정위원 회사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 7조제10항 관련)	중앙환경분 쟁조정피해 구제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 7조제10항 관련)	
총 계	22	26	+4
일반직계	22	26	+4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심사관)	6	8	+2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 · 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	7	+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의4]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4</u>	<u>145</u>	+1
일반직 계	<u>144</u>	<u>145</u>	+1
·	·	·	
4급 이하	<u>98</u>	<u>99</u>	+1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3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제4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u>1. 제43조 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u>	<u>1. 제43조 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u>	
총 계	<u>4</u>	<u>2</u>	-2
일반직 계	<u>4</u>	<u>2</u>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2</u>	<u>1</u>	-1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2</u>	<u>1</u>	-1
·	·	·	

3. 제4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u>3. 제43조</u> <u>제3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4</u> <u>년 12월 3</u> <u>1일)</u>	<u>3. 제43조</u> <u>제3항 관</u> <u>련 한시</u> <u>정원(존</u> <u>속기한: 2</u> <u>026년 12</u> <u>월 31일)</u>	
	.	.	
	.	.	
4. 제4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u>4. 제43조</u> <u>제4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4</u> <u>년 12월 3</u> <u>1일)</u>	<u>4. 제43조</u> <u>제4항 관</u> <u>련 한시</u> <u>정원(존</u> <u>속기한: 2</u> <u>024년 12</u> <u>월 31일)</u>	-4. 제43조제4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4 년 12월 31일)
	총계	3	<삭 제> -3
	일반직 계	3	<삭 제> -3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삭 제>	-1

<u>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 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u>	<u>2</u>	<u><삭 제></u>	-2
	5. 제43조 제5항 관 련 한시정 원(존속기 한: 2024 년 12월 3 1일)	5. 제43조 제5항 관 련 한시 정원(존 속기한: 2 027년 12 월 31일)	
	.	.	
5. 제4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	.	
	.	.	
	.	.	
6. 제43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u>6. 제43조</u> <u>제6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4</u> <u>년 12월 3</u> <u>1일)</u>	<u>6. 제43조</u> <u>제6항 관</u> <u>련 한시</u> <u>정원(존</u> <u>속기한: 2</u> <u>024년 12</u> <u>월 31일)</u>	-6. 제43조제6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4 년 12월 31일)
	총계	2	<삭 제> -2
	일반직 계	2	<삭 제> -2

<u>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 보건 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u>	<u>1</u>	<u><삭 제></u>	-1
<u>공업연구소 · 농업연구소 · 보건 연구소 또는 환경연구소</u>	<u>1</u>	<u><삭 제></u>	-1